##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의 제한성

박 희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 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제작발사하고 우주공간의 개발과 연구, 리용에서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우주공간은 모든 나라들의 공동의 재부이며 매개 나라는 우주공간을 개발하여 평화 적목적에 리용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지니고있다. 국제우주법에 의하여 공인된 이러 한 권리는 현시기 우주를 독점하려는 일부 나라들의 전횡에 의하여 심히 유린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우주개발활동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의 규제내용을 분석하고 그 제한성을 밝히는것은 현 국제우주법제도 전반에 대한 옳은 리해를 확립하는것과 동시에 국제우주법을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엄격히 준수되는 법으로 더욱 개선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는 1967년에 채택된《달 및 기타 천체들을 비롯한 우주의 탐사 및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의 제6조와 제7조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1972년에 채택된《우주물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국제적책임에 관한 협약》(《책임협약》)과 일련의 국제기구결의들에 의하여 확립되였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는 우주의 개발리용에서 제기되는 국제적인 불 법행위들을 극복하고 공정한 우주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확립되였지만 우주활동과 관련 한 리론실천적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의 제한성은 첫째로,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 적책임의 당사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정의에서 일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에 서 론난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우주조약》제6조에는 국가는 우주공간에서의 국가활동이 정부적기관에 의하여 진행되든 혹은 비정부적기관에 의하여 진행되든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국제적책임을 지며 우주공간에서의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활동은 해당한 국가에 의하여 허가와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우주공간에서의 《국가활동》이라는 개념과 《해당한 국가》라는 표현을 어떻게 리해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우선 《국가활동》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행위에 대하여서만 국제법적책임을 진다. 국제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개인을 비롯한 사적기관들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는 사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들의 행위는 그것이 정부적 및 권력적요소를 가지고있는 경우에만 국가행위로 인정된다.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것은 국제법의 보편적인 요구로서 2001년의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에도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우주조약》 제6조에서는 모든 우주활동은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관계없이 《국가활동》으로 간주되며 국가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로 된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우주의 개발리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활동까지도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기관뿐아니라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활동까지도 《국가활동》으로 된다는 이 규정을 놓고 그것이 보편적인 국제법의 요구와 국제법상 국가책임제도에 부합 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대두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국제법학계와 국제우주실천활동에서 는 공해와 같이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물체발사도 《국가활동》으로 되는가 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론쟁이 제기되고있다.

이 규정은 국제우주법제도가 확립되던 첫 시기 우주공간에서의 모든 사적활동을 금지할것을 요구한 쏘련과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우주공간의 무제한한 리용을 주장해온 미국사이의 타협의 결과로서 우주의 개발리용과 관련한 국가책임문제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리해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또한 《해당한 국가》라는 개념과 관련한 해석에서 통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활동이 《해당한 국가》에 의하여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해당한 국가》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인가 하는 문제도 해석상론쟁을 적지 않게 발생시키고있다. 그것은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령토국가와 실지 개인이나 법인들이 법적으로 소속되여있는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 국가》를 정확히 확정할수 없는 것과 관련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활동이 진행되는 령토 국가와 실지 그들이 소속된 국가가 다른 경우 서로 련관되여있는 국가들이 다 국적국가 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러한 국적국가들이 《해당한 국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 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여기로부터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한 사적인 우주활동에 대하여서도 모든 《해당한 국가》들이 다 허가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실천적으로 제기되고 그로 하여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가책임제도의 해석적용에서는 통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의 제한성은 둘째로,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 적책임의 근거와 형태가 육체적 및 재산적손해와 물질적배상에 국한됨으로써 우주활동 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킬수 없도록 한다는 데 있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는 우주의 개발리용에서 국제적인 불법행위들을 극복하여 우주공간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자유로우면서도 평화적인 리용을 법적으로 담 보하기 위하여 확립된 제도이다. 그런것만큼 우주활동과 관련한 책임의 근거나 형태는 우 주활동에서 나타날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와 가해행위들에 대하여 다 적용될수 있도록 하 면서도 피해를 입은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책임질수 있도록 설정되여야 한다. 그러나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에서는 책임의 근거나 형태가 매우 일면 적으로 규제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리론실천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있다.

우선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의 근거를 육체적 및 재산적손해에 국한시킴 으로써 우주활동과정에 나타나는 많은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수 없게 되 여있다.

《책임협약》제1조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의 근거로서 생명의 손실과 상해, 건강에 대한 침해, 국가 및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정부적국제기구들의 재산에 대 한 손실이나 손해를 들고있다. 《책임협약》제2조와 3조에는 우주물체의 발사국은 해당 물 체가 지상에서 혹은 비행중의 항공기에 입힌 손해, 지구표면외에서 우주물체나 비행중의 인원과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책임을 진다는것이 규정되여있다.

《책임협약》의 이러한 조항들은 일정한 우주활동이 다른 국가와 그에 속한 개인이나 법인 등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육체적 및 재산적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피해국가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 가해국에 국제법적책임을 추궁할수 있다는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주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육체적 및 재산상손해와 같은 물질적손해는 초래하지 않지만 국제우주법의 공인된 원칙과 요구를 위반하거나 사람들에 게 정신적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그러한 행위들로서는 우 주를 군사적목적에 리용하는 행위,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우주를 모든 나라와 인민의 리해관계에 배치되게 리용하는 행위, 우주에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비방중상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와해시키는 행위 등과 같은것들이 있다. 다른 나라의 우주물체들을 고의적으로 회수하거나 파괴하며 요격하거나 추락시키는 것과 같은 적대행위는 물론 비록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주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심 장발작과 같은 정신적충격을 주는 행위와 같은 간접적인 행위들도 우주활동과 관련한 손 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를 확립한 국제법규범들에서 는 직접적인 물질적손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그밖의 많은 위법행위들 에 대하여 실제적인 책임을 추궁할수 없게 하고있다.

또한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의 형태를 물질적인 손해배상에 한정시킴으로 써 우주활동에서의 불법행위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 있는 담보를 주지 못하고있다.

《책임협약》제12조에서는 배상과 관련하여 해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수 있는 정도로 회복하는것 즉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 《책임협약》의 여러 조항들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들이 렬거되여있다. 이것은 《책임협약》의 해당 조항들이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의 형태를 오직 물질적인 손해배상에 한정시키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주활동으로 하여 초래된 손해를 물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것이 우주를 개 발리용하려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활동을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책임형태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상회복과 같은 물질적인 배상만으로는 우주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성격과 위법성정도, 행위자의 주관적의도와 동기,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손해와 후과에 따르는 책임추궁을 원만히 할수 없다. 특히 자주권침해나 내정간섭과 같은 정치적인 가해행위와 사람들에게 정신적손해를 주는 행위와 같이 피해액을 계산할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추궁할수 없다.

현시기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책임의 형태에는 손해배상외에도 불법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사죄와 유감의 표시, 관련자처벌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때문에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다양한 책임추궁형식을 받아들여 우주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을 가할수 있도록 그 제도를 완비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의 제한성은 셋째로, 우주활동과 관련한 손해배 상청구의 해결방식이 실제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우주의 개발리용에서 제기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국제법적책임을 원만히 추궁할수 없도록 한다 는데 있다.

《책임협약》제8조와 제9조, 제18조와 제19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들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해결방식을 발사국의 국내재판기관을 통한 해결과 외교적해결, 배상청구위원회를 통한 해결의 3가지로 규정하고있다. 《책임협약》에 규정된 이러한 배상청구해결방식들은 손해를 입은 국가나 개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을 원만히 실현하는 형식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선 피해국과 피해자는 문제로 되는 우주물체를 발사한 발사국의 재판소나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 있는데 이러한 발사국의 국내기관을 통한 사법 적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된다.

그것은 손해를 초래한 우주물체를 발사한 국가가 사실상 가해국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때문에 발사국은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에서 자기의 책임을 면제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특히 개인들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거부되거나 기각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국과 피해자는 담판 및 협상과 같은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특히 개인들에 대한 외교적보호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심히 제한될수 있다.

그것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 대한 외교적보호권인 경우 해당 사람들의 국적국가가 제기하지 않을 때에만 손해발생지국가와 거주지국가가 제기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약화되거나 실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게 되며 또 배상청구국과 발사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없을 때에는 다른 국가가 그를 대신하여 배상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배상청구권이 거의 실현될수 없도록 하는데서 표현된다.

또한 배상청구문건을 제기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1년)내에 외교적협상을 통하여 해결할수 없으면 배상청구위원회를 설립하여 배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규제한것 역시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해당 배상청구위원회의 결정이 오직 권고적인 성질만을 가지고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것과 관련된다.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에 포함되여있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하여 오늘 날 우주활동과정에 감행되는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실제적인 제재와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있다. 미제는 우주개발에 나선 첫 순간부터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그것을 세계평화와 안 전을 파괴하며 전인류의 리익을 침해하는데 리용하여왔다.

특히 미제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저들의 범죄적만행은 감싸고 오히려 국제법상 합법 적인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면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하는 등 온갖 국제불법행위들을 일삼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국제우주법의 공인된 원칙과 요구가 무시되고 우주공간이 전장으로 전락되여가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의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적책임제도에 존재하는 법률적문제들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공화국의 위성발사와 우주개발활동의 정당성을 국제법적으로 론증하며 우 주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공간으로 리용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 동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할것이다.